

●법무부령 제1117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6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를 신청하는”을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으로, “신청서와”를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

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

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별로”를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제321조제1항에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별지 제1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00검찰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 000검찰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검 사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형제XXXX호 / 20XX임시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비 고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 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 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000검찰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수 신: △△△지방법원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허가를 청구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집행일부터 xx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0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보 전 요 청 신 청 전 자 정 보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범 죄 사 실 및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신 청 기 간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 에 관하여 보전이 이루어진 경 우 그 취지 및 범 죄 사 실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 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연 장 허 가 신 청 보 전 자 정 보	별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범 죄 사 실 및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연 장 신 청 기 간	별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기 취 지 각 하 는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긴급
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승인	불승인	비 고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승 인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
긴 급 보 전 요 청 일 시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전 자 정 보	
범 죄 사 실 및 긴 급 보 전 요 청 사유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검 사 결 정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0호의7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건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승인	불승인	비 고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승 인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
긴 급 보 전 요 청 일 시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전 자 정 보	
범 죄 사 실 및 긴 급 보 전 요 청 사유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000검찰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 000검찰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검 사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형제XXXX호 / 20XX임시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보 전 기 간 연 장 대 상 전 자 정 보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XX일(3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법 원 허 가 에 관 한 사 항	0000. 00. 00. △△지방법원 □□□ 판사 연장 허가
비 고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 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서 사본 첨부

【별지】

보전 기간 연장 대상 전자정보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000검찰청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신: 000검찰청

제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통지

검사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상사건	20XX형제XXXX호(20XX공조XX호) 000위반 00경찰서 20XX-XXX호 000위반
취소대상보전요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소사유	
취소범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 검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보 전 요 청 신 청 사 건 번 호	제0000-000호
보 전 조 치 결 과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전조치 미이행 전자정보 및 미 조치 사유	첨부 전자정보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기재 내용과 같음

○○○검찰청

제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 검 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보 전 기 간 연 장 요 청 신 청 사 건 번 호	제0000-000호
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결 과	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기 간 연 장 조 치 미 이 행 전 자 정 보 및 미 조 치 사 유	첨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기재 내용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u>청구를 신청하는</u>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u>신청서와</u>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 ----- ----- ----- ----- <u>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u> ----- ----- ----- <u>신청서 또는 요청서와</u> ----- ----- -----.
1.·2.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2의2. <u>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u> <u>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u> <u>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u>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 ④ (생략)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illegible]

1. · 2. (생 략)

⑥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
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
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
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
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
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
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
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
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

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

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
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
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
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
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
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
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
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
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
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정보 보존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존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존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존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 서식의 전자정보 보존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존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 긴급보존요청을 하거나 보존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
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46. (생략)

<신설>

<신설>

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
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
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
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
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
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

-----.

1. ~ 46. (현행과 같음)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
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
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
인결정부

<u><신 설></u>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 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 인건의 지휘부
<u><신 설></u>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 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47. ~ 144. (생 략) ②·③ (생 략)	47. ~ 14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